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43호서식] <개정 2012.7.5>

# 폐수 [ ] 수탁처리업 [ ] 재이용업 변경등록신청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 쪽)

| 등록번호 제 호 | 접수일 | 처리기간 10일 |
|---|---|---|

| | | |
|---|---|---|
| 신청인 | 사업장명 | 사업자등록번호 |
| | 대 표 자 | |
| | 주 소 (전화번호: ) | |
| | 사업장 소재지 (전화번호: ) | |
| | 착공 예정일 년 월 일 | 설치완료예정일 년 월 일 |

변경등록명세

| 변경등록사항 | 변경 전 | 변경 후 | 변경사유 |
|---|---|---|---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
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제1항 후단,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제7항에 따라 [ ] 폐수 수탁처리업 [ ] 폐수 재이용업 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**시・도지사, 시장・군수・구청장** 귀하

| | | |
|---|---|---|
| 신청인 제출서류 | 1. 폐수 수탁처리업 또는 폐수 재이용업 등록증 원본<br>2. 변경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<br>가. 폐수처리의 용량・방법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: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(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휴업계 1부를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)<br>나.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: 그 밖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| 수수료<br>각 5,000원<br>(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4,000원) |
|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| 1. 상호 변경 시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<br>2. 상호 변경 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(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) | |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

## 처 리 절 차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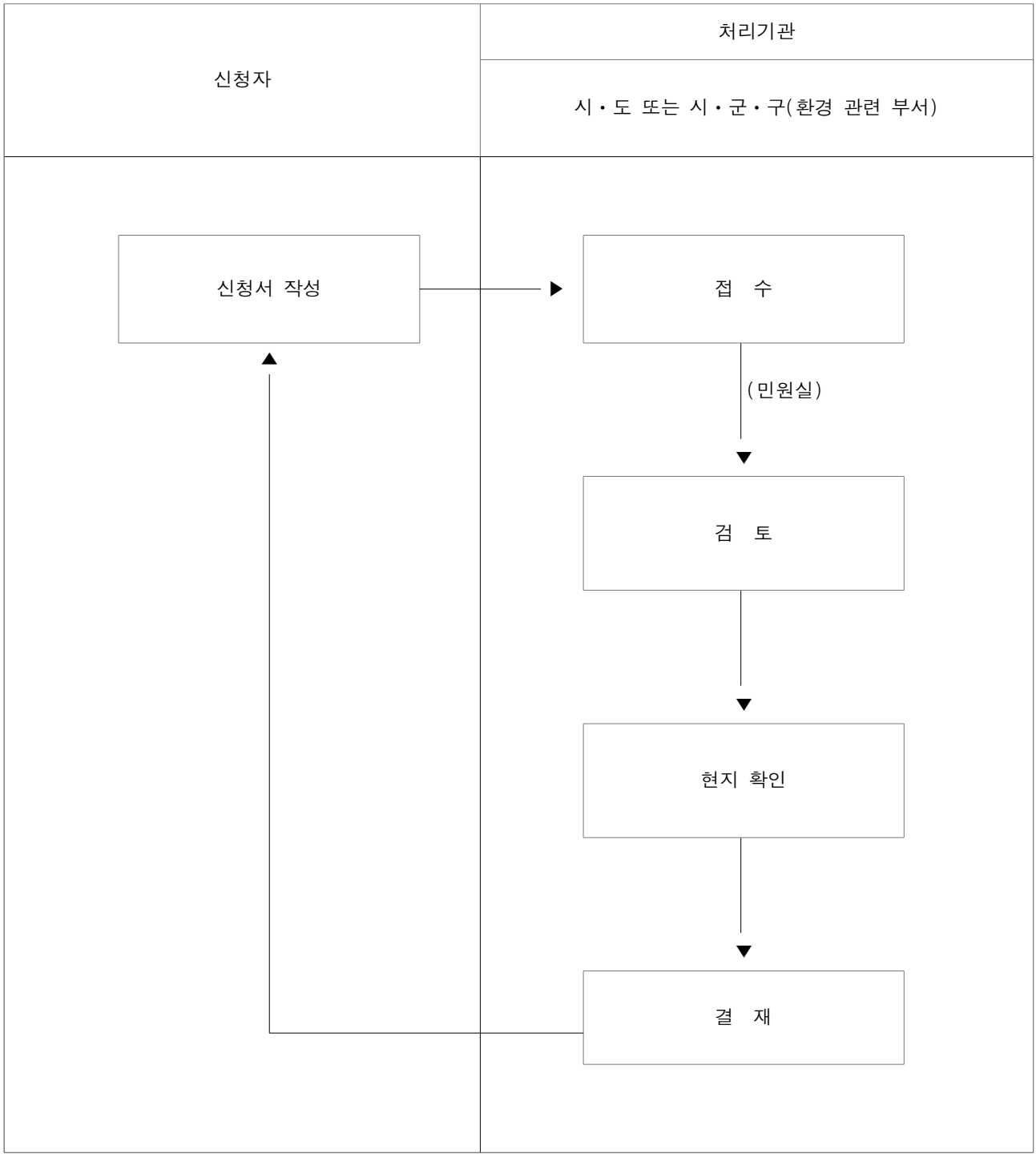
※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